

제공일자	2014. 3. 18(수)	담당자	이승준 연구위원	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30 010- 6290-0369	총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』 보고서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 호) 이승준 연구위원은 『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』 보고서를 발간하였음.
- 보험업에 대한 경쟁규제는 단체성에 기반한 보험업의 사업모형과 건전성 감독 등 전문적 금융규제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.
-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원적(二源的) 보험시장 경쟁규제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 방안으로 법체계와 행정지도 절차 정비, 전문규제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시장경쟁 활성화를 제시함.

□ 보험연구원은 최근 “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.

- 보고서는 보험요율 자유화 이후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.

□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원적(二源的) 보험시장 경쟁규제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 방안으로 법체계와 행정지도 절차 정비, 전문규제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시장경쟁 활성화를 제시함.

이원적 규제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

- 2000년 4월 부가보험료 자유화 이후 공정거래법이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, 이에 따라 **금융감독당국과 경쟁규제당국의 이원적 규제**로 인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가 증가하여 왔음.
 - 제도적으로는 보험가격이 자유화 되었으나, 실질적인 보험가격 결정은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**행정지도에 의한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**이 시작됨.
 - 2000년 이후 보험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는 모두 7건이며 대부분 **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연관되어** 있는 경우임.
- 이러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는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규정한 법체계가 미비하고, 금융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지도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.
 - 법규리스크의 증가는 보험회사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를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됨.
- 또한 보험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인하여 공동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**소비자신뢰가 추락**하고, 결국 보험업의 장기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음.
 - 향후 공정거래법 관련 **집단소송**이 도입될 경우, 현재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,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증폭되고 일부 중소보험사의 경우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음.
 - 따라서 보험시장 경쟁정책의 투명성 향상을 통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

크의 감소는 소비자신뢰 회복과 보험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.

- 이승준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법체계와 행정지도 절차 정비, 전문규제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와 시장경쟁 활성화를 제시하였음.
 - 거대재해 공동인수 등 보험업 특정 공동행위와 개별 공동행위 인가를 위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및 그 조건을 보험업법에 명시하되 일몰조항으로 도입하여 적용제외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심사
 - 보험가격 관련 행정지도를 자제하고, 행정지도에 따르는 보험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 간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지도
 - 이원적 규제의 충돌 시 전문규제기관 의견의 우선적 반영을 통해 법적용의 일관성 확보, 시장의 혼란방지 및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 감소
 - 보험시장에서 가격 및 상품 규제 등 사전적인 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 등 사후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
- 시장경쟁 활성화 바탕 위에 경쟁규제 관련 법체계 정비와 당국 간 사전 의견조율이 이원적 규제 아래에서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쟁정책 개선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.
 - 이를 통한 이원적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을 향상시켜 결국 보험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음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